

종교적 영성과 법의 실천적 의미와의 관계성 연구 -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과 정의의 실천을 중심으로 -

박우영 (감리교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종교적 영성과 법의 관계에 대한 질문
- II. 왜 신비주의 영성인가?: 주관적 신비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실천으로
- III. 종교와 법의 실천적 관계: 기독교 내 정의, 심판, 그리고 언약
- IV. 법의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
- V. 실천적 정의로서의 관계성과 신비주의 영성
- VI. 법의 실천적 의미로서의 정의와 신비주의 영성적 전통
- VII. 나가는 말: 신비주의 영성과 법의 실천적 접점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irituality of Religion and
the Practice of Law: Focusing on the Mysticism of Christianity and the
Praxis of Justice

Park, Woo-Young

Mysticism as a spirituality in the realm of religion has motivated moral agents into raising critical questions against traditional theological understandings of relationships among God, selves, and others in the world and further into saying 'No' against distorted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a direct experience of the union with God. Those who experience the true beauty of relationship based on the union cannot help but try to criticize dominant oppressive relationships and to build up new alternative ways of life 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sistance. This could be related closely to the praxis of justice as the purpose of law represented by God which Jacques Ellul considers conditions of the covenant with God. In the covenant, people as *Mystiker*, that is, people as moral agents who practice justice as a practical application of law are invited to creatively make new moral relationships which supports the abundance of life. The conjunction between mysticism in Christianity and the praxis of justice in the realm of law can be a responsible creating task for re-making alternative moral relationships.

Key words: mysticism, law, religion, radical relationship, moral agents,
resistance

I. 들어가는 말: 종교적 영성과 법의 관계에 대한 질문

종교와 법의 상호작용을 역사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모델 뿐 아니라 긍정적인 모델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가 가지는 하나의 근본주의 신학적 입장이 국가의 법 적용과 해석에 절대적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기존의 사회 관계성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적 입장이 국가 권력의 임의적이며 폭력적 행사로 인해서 물리적 억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Bill Moyers)는 근본주의 신학의 폐해에 관해서, 신학은 진리로 입증될 수 없는 명제들을 강력히 보증해 주고, 이데올로기는 실제 삶의 모순들이 있을 지라도 특정한 세계관을 견고히 지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 다시 말해서, 종교의 근본주의적 신학은 부정한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제도는 사회적 모순을 저항 없이 수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본주의 신학은 근본적 진리는 이미 드러났고,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자부하기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해할 사고의 틀을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비진리로 정죄하게 된다. 아울러 도덕적 주체의 윤리적 사유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세계관의 대화와 수용에 매우 폐쇄적인 비이성적인 반과학주의적 경향을 띤다. 또한 근본주의의 위계적 질서신학을 사회의 계층질서와 결합시켜 차별적 문화를 강화하고, 사회의 지배적 가치구조들과 선택적으로 혼합주의를 이루는 문제점들을 드러낸다.²⁾

이와는 달리, 종교의 제도와 교리, 신학적 이해가 자유, 평등, 정의와

1) 매튜 폭스, 김영명·문화춘 역, 『새로운 종교개혁: 창조영성과 기독교의 변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 (서울: 코나투스, 2010), 67에서 재인용.

2) 박충구,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신앙공동체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87-101.

같은 인간의 기본가치(Grundwerte)³⁾를 지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회의 공공복지, 공동선, 그리고 인권의 보다 정의로운 실현을 위해 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교는 그 안에 폭력과 평화의 얼굴⁴⁾을 양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관계 이해 속에는 종교의 핵심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영성적 차원과 법이 가지는 관계성에 관한 물음들, 즉 영성적 차원과 법의 실천적 적용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비판적 이해들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카톨릭 평신도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huegel (Friedrich von Huegel)은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세 가지 지속적인 요소들을 지적한다.⁵⁾ 첫째,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서 의미와 기억들과 연관된 것이며, 베드로적 전통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분석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서 이성과 교리와 연관되며, 기독교 전통 중 사도 바울적 전통과 긴밀히 연관된다. 셋째,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의지와 사랑과 연관되고,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는 이것을 요한공동체적 전통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필자는 기존의 종교와 법의 상호관계

3) 생명과 평화의 사회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가치 판단요소를 마틴 호네커는 기본가치라고 파악하면서, 이를 자유, 평등, 정의라고 이해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artin Honecker, *Das Recht des Menschen: Einfuehrung in die Evangelische Sozialethik*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haus, 1978), 167-192.

4) 박충구,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 (서울: 흥성사, 2013), 8.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많이 존재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박충구 교수는 평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의 지배(종교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회적 폭력, 관계적 폭력, 물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심지어 전쟁의 폭력)를 받아들이게 됨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의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야기된 위장된 평화와 사랑의 길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힘은 그 길을 살아내는 실천적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5) 도로테 쾰레, 정미현역, 『신비와 저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8에서 재인용.

성에 관한 연구가 역사적, 제도적 종교 또는 이성적 교리적/신학적 종교의 측면과의 관계성에 보다 집중되어 왔다고 보며, 여기서는 종교의 영성이 법의 실천적 의미와 어떠한 긍정적 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갖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들이 실제적으로 정의의 실천으로서의 법의 적용에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질문해 보고자 한다. 근원적으로 다른 절대 존재와의 만남으로서의 신비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영성의 측면이 어떻게 정의의 실천과 맞닿을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고, 이것이 종교와 법의 관계성을 보다 의도적이고 책임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일에 어떠한 통찰을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신비주의 영성이 법의 실천적 의미로서의 관계의 회복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질문해 보려는 것이다.⁶⁾

이러한 질문에 답변해 나가기에 앞서서 ‘영성’(Spirituality)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영성이란 개념을 타자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인식하여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인식과 실천의 종합이란 의미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서 영성이란 영, 혼, 육의 분리주의적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적 존재(a whole being)가 소유한 도덕적인 창조성과 관련 되어 있음에 관심하고자 한다. 많은 경우, 신비주의는 주관적 열광주의 또는 사회적 삶과 차단된 은둔적 삶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떤 것으로 재단화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에서 신비주의 영성이란 근원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자리와 위치, 즉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성들을

6) 본 논문은 법의 실천적 의미로서의 정의의 사회적 실천에 관심하려는 지향점을 갖는다. 자연법적 전통과 더불어 법에 관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정의의 실제적 실현으로서의 법이란 차원에서 사회제도적 차원의 법 이해와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가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법에 관한 신학적 이해, 제도적 사회법에 관한 이해,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법에 관한 이해 등이 함께 다뤄질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지배적 사회적 관계성들, 더 나아가 규정되어진 사회적 관계성들, 그리고 왜곡되어 인간의 기본적 삶의 가치를 억누르는 관계성들에 대한 비판적 점검의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신비주의 영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도록 이끈다.

II. 왜 신비주의 영성인가?

: 주관적 신비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실천으로

종교 전통 안에서 신비적인 것은 언제나 어떤 종류의 만남을 전제하고, 그 만남은 하나의 주체에 연결된 또 다른 주체와의 만남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신비주의적 만남 속에서는 서로 다른 주체들은 사라지고 근원적 존재와의 온전한 연합만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비적인 것이란 또 다른 하나의 존재 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회 속에서 굳어져 내려오는 정형화된 관계들 속에서 주어진 관계들의 문제점을 읽어내고, 새로운 관계들을 꿈꾸고 이루어내려는 시도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가능한 것일까? 신비주의자들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에게 침잠하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억누르고 있는 힘의 구조들을 초월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신과의 전적인 연합과 합일을 통해서 자연스레 누려지는 삶의 방식과 그 결과가 도덕적 자율성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왜냐하면,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 누리는 직접적 경험, 주체와 주체와의 만남, 규정된 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사라지는 경험⁷⁾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의 부당함을 제대로 읽어낼 근거

7) 김영태, 『신비주의와 퀘이커공동체』 (고양: 인간사랑, 2002), 31.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직접적인 신비적 경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개방적 경험이다. 이러한 직접적 경험이 갖는 개방성의 의미란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 열광주의라는 폐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강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⁹⁾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라고 할 때, 이 점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주체로서 관계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매우 요청적인 의미를 갖는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일과 관련하여, 독일 여성신학자 도로테 쾰레(Dorothee Soelle)는 “신비주의를 보편화”¹⁰⁾하는 일에 자신이 관심하고 있다고 밝힌다. 단지 주관적 신비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 속에 공유될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기독교 전통 신앙적 삶의 양식은 교리 중심적이고, 체계적이고, 매우 역사적이며 제도적이고, 소위 기존의 사회가 말해 왔던 남성적 속성을 대표해 온 반면, 신비주의적 영성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의 양식에 대해 개방적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¹¹⁾ 가르쳐지고 규정되어진 삶의 양식과 구조로부터

8) 생태적 영성에 기초한 관계성에 관심하는 여성신학자 샬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는 하나의 ‘주체와 주체들의 모델’(a subject-to-subjects model)을 대안적 관계성의 하나로 제안하고, 또한 그 관계성이 보다 특별히 ‘우정’(friendship)에 놓여있음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대안적 관계성 가운데서 자신과 다른 주체들에 관한 체화된 이해를 갖게 된다. 이제 관계성에 관한 표현의 언어는 다른 주체들의 전인적 행복과 구체적 복지에 기준하여 표현된다. 존경, 상호성, 특별한 것에 관한 관심, 경청, 개방성, 주의를 기울이기, 돌봄, 관심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은 한 존재가 다른 주체들을 어떻게 알아가고, 돌보고, 존중하는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실제로 경험되는 관계성들에 대한 이해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Sallie McFagu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32-44.

9) 쾰레, 17.

10) 쾰레, 16.

11) 쾰레, 19-20.

삶의 작은 사건과 이야기들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성, 사소한 것들이라 치부하기 쉬운 것들에 풍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신비주의적 영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천적 의미에서 신비주의적 영성을 살펴본다면, 이 영성은 하나님 경험, 신과의 연합이라는 경험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 신비주의라는 것이 단순한 세상에 대한 주관적 부정이 아니라, 사유화된 지배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저항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 경험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려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고유한 경험들에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며, 기존의 사회관계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인식하려는 노력들은 신비주의적 영성이 이끌어내는 삶의 모습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종교와 윤리가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신앙적 삶의 양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¹²⁾ 예를 든다면, 중세 신비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는 전통적인 신 이해를 거부하면서, 신적 불가지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침묵하기보다는 다양한 형용사를 통해서 신을 명명하려고 시도하였다.¹³⁾ 개념화되고 이론적으로 계층화된 추상적인 신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존재와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신에 수많은 이름을 신에게 붙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경험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는 힘, 이

12) 필레, 22-24.

13) 에크하르트는 전통적 삼위일체의 신, 교리화되고 계층적으로 이해된 신, 초월자로서의 일자, 전지전능하여 피조물과의 질적 차이를 강요하는 신 이해에 대해서 동의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요된 신이해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에크하르트의 신 이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Bernard McGinn, "The God beyond God: Theology and Mysticism in the Thought of Meister Eckhart", *Journal of Religion*, 61, 1981, 10-13.

것을 반신비주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체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현실의 근원적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장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근원적 경험¹⁴⁾과 직면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의 사회의 지배적 가치구조는 그러한 경험들을 임의적이고, 비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사유화하여 매우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때로는 그러한 경험을 미성숙한 것으로 또한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한 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그렇다면, '다른 현실의 근원적 경험'을 하찮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칠레에 따르면, 그것은 삶의 의미들을 사소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¹⁵⁾ 당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조정하기 시작하는 매우 무서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비판의 긍정적 힘이 아니라, 자기비하라는 실천적 무기력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억압적 통치와 조정은 다름 아닌 존재로서의 의미 부정이며, 모든 존재가 창조적으로 도덕적 힘을 발휘하려 할 때 사회적 검열의 기능을 발동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의 부정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근거가 신비주의 영성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성' 이해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속하여 있다는

14)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연과의 대화, 꽃과 풀과 물들이 노래를 하는 경험,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복되고 평온한 자리로 경험되는 것, 아침에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을 경험하는 것, 생명의 시작에 대한 경이로움이 자신을 압도하는 경험, 물질 파동의 중심으로 잠기는 경험을 통한 고요와 평안, 마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오르는 것과 같은 경험 등 매우 구체적이며 역동적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은 완전한 생명과 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이다.

15) 칠레, 35.

16) 칠레, 43.

영성적 이해이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나 그 경험에 근거한 관계성들을 새롭게 설명할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신에게 속해 있으며, 신은 모든 존재들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세계 내 존재들은 급진적이라 할 정도로 서로의 존재와 삶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존재들(all beings)은 엄밀히 말해서 ‘간존재’들(間存在, inter-beings)이라고 불러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III. 종교와 법의 실천적 관계

: 기독교 내 정의, 심판, 그리고 언약

종교의 어원적 의미가 새로운 ‘관계 재설정’(re-relating) 혹은 새로운 ‘관계의 재연합’(re-bonding)¹⁷⁾이라고 할 때, 종교는 새로운 관계성의 창출, 보다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도덕적 관계성의 창출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종교와 법의 엄밀한 구분보다는 이 두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대에서는 종교와 법의 단순한 분리를 거절하고 그렇다고 두 영역이 서로에게 함몰됨 없이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¹⁸⁾ 기독교 전통 내 법 이해가 어떻게 실천적 정의(justice)라는 법 개념과 만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을 따라가 보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종교가 법의 초월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어떠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답을 주기 때문이다. 호네커(Martin

17) John Chryssavgis, *Beyond the Shattered Image* (Minneapolis, MN: Light & Life Publishing Company, 1999), 44.

18) Winnifred F. Sullivan, Robert A. Yelle, and Mateo Taussig-Rubbo, ed., *After Secular Law*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6-7.

Honecker)는 그의 기독교사회윤리 이해에서 기독교적 고유성(Proprium)이란 기독교적 사회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기독교적 내용을 가진 윤리적 규범들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수준에서의 동기화(motivation)란 차원에서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의미의 차원이란 보다 인간적인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향한 실천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적 차원이 기독교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는 이해이다.¹⁹⁾ 기독교의 고유성과 실천적 정의라는 법 개념 사이의 관계성도 동기화의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교적 법 이해를 추구했던 자크 엘룰(Jacques Ellul)에 따르면,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성서에 의해서 선이 그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법의 개념”²⁰⁾이며, 이 법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엘룰은 말하길, 정의의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정의의 규범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정의이며, 정의에 따라 정리된 것이 법이다.²¹⁾ 이 정의를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모든 존재의 죄를 짊어진 죽음은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냈다. 이에 근거해서 엘룰은 하나님의 정의가 말하는 최상의 행위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정의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²²⁾이 된다. 이는 정의를 행하는 일과 동정을 불러일으

19) Honecker, 23-24.

20) 자크 엘룰, 강만원 역,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3), 71. 이와 같은 법 개념은 신중심적 자명성이란 이해와 연결된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21) 엘룰, 72.

22) 엘룰, 74.

키는 신비주의의 매우 중요한 영성적 특징과 맥을 같이 한다.²³⁾ 여기서 엘룰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론적 법 이해는 기독교의 독특한 고유성을 주장하는 법 이해로 읽혀질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가치의 실천을 향한 강력한 동기의 차원에서 읽혀질 필요²⁴⁾가 있다고 본다.

관계의 회복을 드러내는 정의로서의 법을 떠올릴 때, 엘룰에게는 법을 침해하는 자들로 인해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전제된다. 그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침해당하는 법적 상황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해야 할 것은 침해당하는 개별적 상황의 고려 없이 전체적 상황 가운데 적용되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상황을 담아내고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법에 관한 초점이 아니고, 개인의 개별적이며 특수한 상황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서의 법에 관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이 점은 정의의 실천이란 법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야 할 지점인데, 법이란 관계의 실제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차원이자 추상적 개념의 적용으로서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엘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권리 외에 인간에게 다른 권리가 없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생적 권리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의 현실을 의미한다. 엘룰

23) Matthew Fox, *The Coming of the Cosmic Christ*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88), 44

24) 필자는 엘룰의 법에 관한 신학적 이해가 호네커가 말하는 사회윤리적 실천의 동기화를 강화하는 일과 상호 비판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본다. 엘룰이 법의 신학적 이해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반면, 호네커는 인간의 기본가치의 실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의 신학적 이해가 단지 기독교적 폐쇄성을 강조하는 이해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기독교의 고유성에 관한 논의가 인간의 기본가치의 실현을 향한 실천의 동기로서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유, 평등, 정의의 실천을 동기화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믿음의 내용은 법의 신학적 이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5) 엘룰, 75.

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권리가 있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강조한다. 영원하고 객관적인 법에 대한 이해보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들에 의해 법이 형성되며, 이 심판들은 인간의 권리들에 의해 형식을 갖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법은 관계와 권리의 회복이란 형식으로 심판을 향해 나아간다. 엘롤은 그렇기에 처음부터 세속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세속적 법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세속적 법이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심판과 정의와 법이란 구조 속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은 본질상 규범적이란 것이다.²⁶⁾ 화석화된 율법주의로서의 규범화에 관한 강조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법의 규범적 본질이 구체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과제와 떨어뜨려 설명할 수 없는 측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는 규범이란 여기에서 강제적 힘으로 해석되기보다, 실천을 향한 강력한 동기적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 평가한다.

이러한 법의 규범성을 엘롤은 ‘언약(covenant)’이란 개념으로 더욱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약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단순한 물적 대상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언약은 어원적으로 하나님이 동역자를 선택하고 선출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 심판의 결과이며 정의의 표현이 된다. 이것은 법의 개념과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된 관계들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단순한 사회조직 체계가 아니라 “인간에게 요구되는 생존조건”²⁷⁾이 된다. 언약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

26) 엘롤, 76-78.

27) 엘롤, 85.

은 인간을 법 밖에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처럼 버려두지 않는 인간의 상황이 회복된 결과로서 이해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들, 즉 법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법의 주체”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부여하셨고, 그 언약이 효과적인 언약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 인간을 “법적 상황”²⁸⁾ 가운데 두신 것이다.²⁹⁾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언약의 행위 안에서 법의 존재를 승인한다. 엘룰은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이 채택한 형식을 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언약 안에서 법의 주체로 자리하기 시작한다. 법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법을 세우는 하나님의 행위는 언약이 된다. 이러한 언약과 법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며 언약의 말씀의 조건들에 응답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는 “무엇보다 세상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뚜렷한 목적”³⁰⁾을 가지게 된다.

법이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으로 존재한다면, 법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일과 직접적 연관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법은 공홀과 분리될 수 없으며, 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엘룰은

28) 엘룰이 말하는 법적 상황은 사회윤리학이 다룰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차원의 질문들과 연관된다. 첫째, 어떠한 사회를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공유되어질 수 있는 가치와 목적 (values/telos)에 관한 질문이 필수적이다. 둘째, 공유되어진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나갈 도덕적 주체들(moral agents)은 공동체와 사회에서 누구일 수 있으며, 어떠한 도덕적 성품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셋째, 도덕적 주체가 공유되어진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 나갈 사회적 제도와 채널들(institutions/channels)은 어떠한 것일 수 있는가? 라는 제도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엘룰이 말하는 언약 안에 놓은 자들은 규칙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선택의 혼란을 제공받으며, 언약이 제시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의 규범적 방향성을 얻게 된다.

29) 엘룰, 86.

30) 엘룰, 153.

그렇기에 법의 적용으로서의 재판은 공흠에 의해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의미는 감정에 따른 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현실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흠은 “어떤 시점에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수단”³¹⁾이다. 이러한 공흠한 마음의 결여가 악법이 생겨나는 이유이며, 그 근본은 진실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법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공흠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공흠의 마음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법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그 적용은 어떤 지침들에 의해 적용될 수 있을까?

IV. 법의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

공흠의 마음으로 법을 적용해 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실제적 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일과 법 해석과 적용의 지침들을 점검하는 작업은 영성과 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필자는 예수회 사제 라디슬라스 외르시(Ladislav Örsy)가 말하는 법 해석과 적용의 여러 지침들³²⁾ 중에서 종교적 영성과의 관계성이란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선별하여 살펴보려 한다. 신학적 법이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제적

31) 엘름, 175.

32) 라디슬라스 외르시, 이경상 역, 『신학과 교회법: 입법과 해석을 위한 새로운 지평』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2006), 77-119의 부분을 참고하라.

법 해석과 적용이 진행될 때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와 법의 연관성 속에서 점검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모든 법 규범은 역사적 산물이란 사실이다.³³⁾ 신학자이며 종교사회학자인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가 기독교 내에서 진리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역사적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며 ‘역사상대주의’를 받아들인 것처럼³⁴⁾, 법 또한 역사 속에서 생성되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 성장해 온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산물이란 의미 속에는 이미 종교와 법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종교와 법의 관계성이 역사적 발전과정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 위치한 역동적 법은 그 법이 시작된 시초의 원래적 의미로 환원되기도 어렵지만, 법이 태동되고 성장한 사회 속의 전통과 단절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과 단절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그 사회의 종교적 영성적 전통과도 단절될 수 없는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법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이 되어버린다면 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³⁵⁾ 법이 형식적 구조로만 남아있으면서, 실제적 삶의 구체적 상황을 살피며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내는 회복적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법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유효성을 상실한 법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악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프랑스의 비판적 철학자 알랭 바디우(Alain Badiou)가 그의 악에 대한 이해에서 지적하듯이, “선의 힘에 대한 모든 절대화는 악을 조직”³⁶⁾하기 시작한다는 통찰과 맥을 같이한다.

33) 외르시, 112.

34) 박종구, 『기독교윤리사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25-127.

35) 외르시, 116.

36) 알랭 바디우, 이종영 역,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서울: 동문선, 2001), 104.

법의 실효성 상실과 법의 퇴장이란 의미는 법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특성 과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윤리적 의미에서 법의 실효성은 언제나 가치판단의 실제적 삶의 적용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를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규칙의 체계는 서로 때로 충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규칙을 찾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행동과 실천의 차원에 있어서 규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가치의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시도³⁷⁾는 보다 책임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법의 주체들, 입법자와 준법자,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목적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또한 어떻게 그것들을 사회적 제도 안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실제적 질문들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결여한 형식적 법체계는 실효성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법의 의미들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세계의 일부가 된다.³⁸⁾ 이는 법체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의 문장과 내용일지라도 서로 다른 세대와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읽어나가고 해석해내는 법의 의미들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와 차이를 고려한 법 해석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인간 공동체가 놓인 삶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청한다. 하지만, 법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으로서의 법이 갖는 핵심적 의미에 대한 책임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³⁹⁾ 예를 들어,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가치에 대한 존중

37) 로빈 W. 로빈, 최영태 역,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윤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63-65.

38) 외르시, 117.

39) 법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규범이 갖는 의미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은, 해석의 열린 가능성 속에서 점검해야 할 도덕적 가치기준들(moral guideposts)

과 확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책임적 해석은 지속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넷째, 법은 의사전달의 기능을 감당하며, 또한 현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변증법적 대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⁴⁰⁾ 입법자와 준법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란 측면에서 이해할 때, 서로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어진다. 의사전달 기능으로서의 법 이해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 이해에 대한 상호 나눔을 전제로 하게 되며, 새로운 의미로서의 법과 세계 이해에 대한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법은 목적과 의무란 사고의 체계 가운데서 세상 속의 급박한 현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적 삶의 양식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균형적 삶의 양식을 살아낼 도덕적 주체로서의 존재가 요청되어진다는 것이고, 신비주의 영성을 통해 대안적 삶의 양식과 관계성에 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새로운 주체들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 이해와 적용에 관한 지침들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 지침들을 수행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법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물음들이다. 도덕적 주체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며, 또한 책임적 도덕적 주체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비판적 점검이 필요한지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의 주체들의 실천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비판할 도덕적, 영적(종교적) 가

을 설정하고 공유하는 일과 연결될 것이다. 도덕적 가치기준들은 해석학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것 역시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점검되고 교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나열해 본다면, 공동체의 책무,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 권력이해의 관점, 역사적 인식의 관점, 자기비판력, 제도에 관한 시각과 태도, 신과 인간에 관한 이해, 어떠한 자료들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이해, 진리주장과 그 근거, 어떤 사람들, 집단, 의견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관한 충성도, 주장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검 기준들은 한 개인,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운동이 갖는 윤리적 방향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안내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40) 외르시, 119.

이드라인은 무엇일 수 있을까? 종교의 신비주의적 영성이 갖는 실천적 차원을 재해석해 내는 과제를 통해서 정의의 실천으로서의 법과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성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실천적 정의로서의 관계성과 신비주의 영성

도덕적 주체로서 신비주의 영성을 소유한 이들의 삶의 실제적 특징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엘룰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행하여 가는데 신비주의 영성과 어떤 연관성들을 가질까? 신비주의 영성은 정의의 실천과 왜곡된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저항적 힘을 발휘하는 일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신비주의자들은 절대적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초월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초월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자아를 넘어서는 경험이며 근원적 중심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모든 이들이 근원적 존재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존재의 신성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존재의 신성함이란 모든 이들의 내재된 욕구로서 선함을 행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신성함의 파괴에 대해, 시몬 베유(Simone Weil)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영혼과 육신이 무시함을 당하고 이를 통해 사유화되는 아픔을 겪고 파괴되어질 때, 그 사람의 육체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을 향한 열망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고통에 처한 이웃을 책임적으로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이 된다.⁴¹⁾ 이처럼 타인의 선을 향한 열망이 하찮게 여겨지

41) Larry L. Rasmussen, "Drilling in the Cathedral,"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 42:3, Fall 2003, 202-225.

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사건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왜곡된 관계성들을 예민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영성이라 생각하며, 특별히 신비주의 영성의 존재들의 급진적 관계성과 맞닿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주의자들이 신과의 만남, 합일을 통하여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 세상의 억압적 현실을 넘어서서 주체와 주체와의 만남, 억압적 대상으로서의 자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급진적 관계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체와 대상으로 규정된 관계가 사회윤리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언제나 지배적인 위치의 주체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억압의 구조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주체와 객체라는 대상화된 관계 속에서, 억압적 주체의 가치와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과 주변의 관계성에 의미를 부여할 스스로의 힘이 철저히 차단된다. 그러나 급진적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신비주의적 영성은 신비주의 전통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현재 사회 속에서 이미 규정된 관계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계성들의 창출을 소망하고 꿈꾸는 길로 인도한다. 근원적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이들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의 악의 현실과 억압적 관계성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인식으로 이끌려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신비주의자들은 대안적 문화, 즉 대안적 삶의 방식을 꿈꾸며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시도하려 한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적 영성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존재들은 관계의 그물망 밖에 결코 홀로 머물 수 없는 '간존재'(間存在, inter-beings)라고 엄밀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총체로서의 근원적 존재에 모든 존재들은 속하며, 서로 간에 연결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성을 간직하지 않은 존재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상호적 관계성들의 왜곡과 억압에 민감하게 반응할 도덕적 주체성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연합’(communion)은 단지 또 하나의 대상적 집단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각각의 주체들로서의 만남이며 연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합의 특징은 존재들의 서열이나 가치의 우열이란 척도는 사라지고, 생명공동체를 살려내고 유지해 내는 각각의 존재의 독특한 가치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동방신학 연구가로서 아리스토틀 펠라파니콜라우 (Aristotle Papanikolaou)는 “금욕적 시민자격” (ascetical citizenship)⁴²⁾을 강조하는데, 이 의미는 단지 타자들에 대한 관용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선입견들에 상관없이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엘룰이 말하는 언약을 통해 유지되어야 할 삶의 조건들과 연관될 수 있으며, 바로 생명공동체의 풍성한 삶으로 번역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의 실질적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될 것이다.

VI. 법의 실천적 의미로서의 정의와 신비주의 영성적 전통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 전통이 강조하고 있는 존재들 간의 급진적 관계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에서 어떠한 사회윤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급진적 관계성에 대한 어떠한 이해들이 정의로서의 법을 실천하는데 어떠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앞서서 언급하였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개개의 존재는 급진적 관계성 속에

42) Aristotle Papanikolaou, *The Mystical as Political: Democracy and Non-Radical Orthodoxy* (Norte Dame: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2012), 153.

서 직면하는 다양한 직접적 경험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신비주의자(Mystiker)⁴³⁾라는 점이다. 급진적 관계성과 신비주의 영성이 함께 강화하는 사회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첫째, 개체로서의 존재들이 경험하는 구체적 고통과 아픔을 체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급진적 연관성을 통해 체화된 고통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분법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고통의 사회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관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사회의 문제인식과 저항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윤리학자이자 여성신학자인 베벌리 해리슨(Beverly W. Harrison)은 급진적 관계성을 통한 고통의 체화를 다음과 같이 축복으로 이해하며 설명한다: “사람의 아픔을 알고, 명명하고, 한 사람의 상처받기 쉬움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 그 아픔을 품어내는 것은 하나의 축복”⁴⁴⁾이다. 타자의 고통을 품어냄으로써 구체적 저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급진적이며, 이 힘은 신성한 존재들로서의 관계성 때문이다. 이러한 급진적 관계성들의 근거는 모든 존재가 전체 속에서 하나 되는 신비적 경험이다. 이 지점에서 신비적 경험은 단지 주관적 표현으로 남아있지 않고, 정의를 향한 책임적 실천이란 측면에서 ‘사회정치적’인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급진적 연관성은 불평등 구조를 숨기고 있는 소위 ‘사이비 연관

43) 쥘레, 91-92. 여기서 쥘레는 마르곳 슈미트(Margot Schmidt)의 이해를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신비주의자(Mystiker)와 허풍스러운 신비가(Mystizist)를 구별한다. 미스티커는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만, 미스티지스는 자기 자신의 노력보다는 신비를 탐내거나 교태를 부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스티커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대가를 치르는 직접성을 추구하지만, 미스티지스트는 단지 직접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그렇기에 미스티커는 깨달음을 얻는 것과 그것에 따른 실천에 관심하지만, 미스티지스트는 근본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44) Beverly W. Harrison, *Making the Connections: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ed. Carol Robb (Boston: Beacon Press, 1985), 234.

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비판적 실천에 참여하도록 한다. 불평등 구조를 읽어내는 작업,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악의 구조를 명명하고, 이에 저항하며 증거하는 일은 급진적 연관성의 차원에서 신성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회적 악을 새롭게 파악하여 명명해 나가며 저항하는 작업은 왜곡된 관계성들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해방신학자 제임스 콘(James H. Cone)은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사회적 악을 직면하여 침묵하는 것은 그 침묵 자체가 '신학적 죄'임을 명확히 지적했다.⁴⁵⁾ 악에 대해 침묵하는 그 자체가 적극적 의미의 죄된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묘히 숨겨진 불평등구조를 사회 가운데 드러내는 작업은 매우 창조적인 도덕적 작업이며, 책임적 실천의 차원에서 신성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신비주의 영성이 강조하는 존재들이 구성하는 생명의 그물망은 다른 존재의 고통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몸의 참여'⁴⁶⁾를 이끌어 낸다. 베벌리 해리슨은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을 도덕적 관계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의를 향한 공동의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해했다.⁴⁷⁾ 그런데, 이 공동의 투쟁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몸의 참여가 훈련되어야 한다. 신비주의 영성이 단지 정신적 동기나 주관적 열광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 존재와의 연합이란 만남은 존재들 간의 관계성들이 반사회적,

45) James H. Cone, "Theology's Great Sin: Silence in the Face of White Supremacy,"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5, no. 3-4, 1.

46) 모든 종교의 공통된 속성 중 하나는 '몸의 수행'을 종교적 삶의 성숙을 위해 강조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금욕적 삶의 양식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몸의 수행, 개인적 수련과 수행에 있어서도 몸의 참여를 통한 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왜곡된 관계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판 작업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몸의 참여와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종교적 영성의 측면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47) Harrison, *Making the Connections*, 10.

폭력적 방식으로 오용될 여지를 막아서는 일에 실질적인 책임적 헌신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고통의 현실에 대한 정보의 풍요를 경험하는 것이 고통의 체화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기에, 고통의 인식에서 머물지 않고, 그 고통의 사회적 구조와 원인에 실질적으로 맞서는 몸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배의 구조에 맞서는 실천은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져 왔던 존재들, 즉 전통적으로 여성, 아동,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⁴⁸⁾과 함께 하는 몸의 실천을 통해 의미의 재설정 작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비주의적 영성이 강조하는 급진적 연관성은 정의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 급진적 연관성이 또 다른 하나의 폐쇄적 구조로 남겨지지 않고, 새로운 개방성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존재의 생명가치들을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핵심적이다. 법적 정의의 실천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판단되어 댓가를 지불하고, 다른 누군가는 보상을 받는 매우 제한적 의미로 오해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급진적 연관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이해한다면, 자신의 존재와 타자가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성취해 나갈 사회적 조건들을 이루어 내는 실천과 연관을 갖는다. 공공선을 위한 공동의 실천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흑인여성신학자 재클린 그랜트(Jacquelyn Grant)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적절하게 ‘제자도’(discipleship)의 개념으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정의란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여야 하고 다른 어떤 이는 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정의의 성취를 통해 모두가 제자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⁴⁹⁾ 어느 누구는

48) 필레, 36.

49) Jacquelyn Grant, "The Story of Servanthood," In *A Troubling in My Soul: Womanist Perspectives on Evil & Suffering*, ed. Emilie M. Townes (Maryknoll, New York:

손해를 보고 다른 어느 누구는 보상을 받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는 점이며, 모두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향한 삶의 변화가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자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에 응답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모두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신비주의적 영성은 정의를 이루어가는 실천적 그물망을 모든 존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신비주의 영성에 내포된 급진적 연관성이 함축하는 실천적 의미들을 하나의 신비적 여행으로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여정의 첫 단계는 경이로움에 관한 경험이다. 이 경험은 ‘긍정의 길’(via positiva)로서 설명되어지며 경이로움의 감각은 삶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게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쥘레에 따르면, 경이로움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우리가 함께 여기에 존재함, 오늘에 존재함, 지금 존재함”⁵⁰⁾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이로움의 경험은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학문적인 인식과 더불어 자라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경이로움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내어버리는 단계, ‘부정의 길’(via negativa)이 찾아온다. 자아와 소욕, 폭력적 삶의 방식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잘못된 인간적 욕망과 소욕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할수록,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은거함’에 더욱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적 여정은 결국 ‘연합의 길’(via unitiva)로 알려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이끌려진다. 창조 안에서 하나됨이란 공동 창조의 형태를 의미하고, 지속적 변혁과 저항의 삶의 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⁵¹⁾ 바로 이 단계에서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과 정

Orbis Books, 1997), 216.

50) 쥘레, 147.

51) 쥘레, 148-150.

의의 실천에 대한 지속적 동기를 공급받게 된다. 신비주의 영성이 바로 정의의 실천적 영성과 만나는 지점이 된다.

VII. 나가는 말: 신비주의 영성과 법의 실천적 접점

신비주의 영성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의 이해와 그것을 지탱해 온 전통적 신학의 설명들에 관해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저항적 행위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⁵²⁾ 저항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 신비주의 영성의 특징은 ‘근원적 존재와의 만남’이란 다양한 작은 경험들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표현해 내는 힘을 향유하게 돕는다는 점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급진적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 경험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바로 억압적 객체로서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사라지고 주체와 주체와의 만남만이 존재하는 신과의 합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영성의 경험은 새로운 대안적 관계성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으키며, 사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왜곡된 관계성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실천적 관심은 질레가 말하고자 하는 신비주의와 저항의 연관지점이다. 엘룰의 법에 관한 이해를 따라가 본다면, 신비주의 영성의 실천적 관심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정의로서의 법을 통해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의 회복의 조건들로서의 법은 언약 속에 드러난다.

52)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와 메칠드(Mechthild von Magdeburg)는 전통적 하나님 이해에 반대하여 얼굴을 돌렸고, 동시대의 신비주의자들과 신성이란 개념을 공유했다. 그들의 신비적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기존의 신학과 기호체계로부터의 탈주로서 부정 신학의 한 측면을 담아내고 있다. 전통적인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림으로써, 새로운 얼굴로서의 하나님 이해와 얼굴을 포개고 새로운 주체로서 살아간다. 이에 관해 다음을 참고하라: 이충범, 『중세 신비주의와 여성: 주체, 억압, 저항 그리고 전복』 (서울: 동연, 2011), 178-184.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인간은 법적 상황에 놓이며, 그 곳에서 법의 주체로 등장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로빈에 따르면, 근원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규칙으로서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만은 아니다.⁵³⁾ 다시 말해서, 규칙으로서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도 여전히 언약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언약을 맺으려면 규칙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정의로서의 법의 실천을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맹목적인 규칙을 통한 체제 순응적 삶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을 향한 삶의 방식이 언약을 지탱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법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성들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인식을 요청받는데, 신비주의 영성을 통한 급진적 관계성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도덕적인 관계성의 창출이란 실천적 동인을 얻을 수 있다. 매튜 폭스는(Matthew Fox)는 모든 사람이 신비가라는 사실의 요청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모든 사람은 신비적으로 태어나고 사물의 통일성을 경험하는 연인이다. 모두는 이러한 신비를 살아 있게 하거나 삶을 사랑하도록 소명을 받았다.”⁵⁴⁾ 스스로를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왔던 인간과 그 공동체가 새로운 도덕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생명의 풍성함이 깃든 사회적 관계성들을 꿈꾸고 실현해 가는 조건들로서의 법을 적용해 가는 지속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덕적 관계성의 창출과 재설정이라는 가능성의 영역이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과 법의 실천적 의미로서의 정의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53) 로빈, 75.

54) 폭스, 107.

참고문헌

- 김영태. 『신비주의와 웨이커공동체』. 고양: 인간사랑, 2002.
- 로빈, 로빈 W., 최영태 역.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바디우, 알랭., 이종영 역. 『윤리학: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 서울: 동문선, 2001.
- 박충구. 『기독교윤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신앙공동체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 서울: 흥성사, 2013.
- 엘룰, 자크., 강만원 역.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3.
- 외르시, 라디슬라스., 이경상 역. 『신학과 교회법: 입법과 해석을 위한 새로운 지평』. 서울: 카톨릭대학교출판부, 2006.
- 이충범. 『중세 신비주의와 여성: 주체, 억압, 저항 그리고 전복』. 서울: 동연, 2011.
- 쉴레, 도로테., 정미현 역. 『신비와 저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폭스, 매튜., 김영명·문희춘 역. 『새로운 종교개혁: 창조영성과 기독교의 변혁에 관한 95개조 반박문』. 서울: 코나투스, 2010.
- Chryssavgis, John, *Beyond the Shattered Image*. Minneapolis, MN: Light & Life Publishing Company, 1999.
- Cone, James H. "Theology's Great Sin: Silence in the Face of White Supremacy".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55, no. 3-4:1.
- Fox, Matthew. *The Coming of the Cosmic Christ*.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88.
- Grant, Jacquelyn., "The Story of Servanthood", ed. Emilie M. Townes, *A Troubling in My Soul: Womanist Perspectives on Evil & Suffering*.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7.
- Harrison, Beverly W. "The Power of Anger in the Work of Love: Christian Ethics for Women and Other Strangers", ed. Carol Robb, *Making the Connections: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Boston: Beacon Press,

1985.

_____. "Keeping Faith in a Sexist Church: Not for Women Only", ed. Carol Robb, *Making the Connections: Essays in Feminist Social Ethics*. Boston: Beacon Press, 1985.

Honecker, Martin, *Das Recht des Menschen: Einfuehrung in die Evangelische Sozialethik*. Guetersloh: Guetersloher Velaghaus, 1978.

McFague, Salli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McGinn, Bernard, "The God beyond God: Theology and Mysticism in the Thought of Meister Eckhart," *Journal of Religion* 61. 1981.

Papanikolaou, Aristotle. *The Mystical as Political: Democracy and Non-Radical Orthodoxy*. Norte Dame: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2012.

Rasmussen, Larry L. "Drilling in the Cathedral",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 42:3, Fall 2003.

Sullivan, Winnifred F./Yelle, Robert A./Taussig-Rubbo, Mateo, ed. *After Secular Law*.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국 문 초 록 •

종교적 영성으로서의 신비주의는 주관적 열광주의로 수없이 오해되어 왔지만, 사실 근원적 존재와의 만남을 경험함으로써 주체와 객체와의 만남이 지배하는 대다수의 억압적 사회적 관계성들을 새롭게 인식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신비주의 영성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과, 자아, 그리고 타자의 관계성에 관한 전통 신학적 이해에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의 왜곡된 관계성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저항적 행동을 감당하게 한다. 왜냐하면, 근원적 존재와의 만남이란 직접적 경험이 주체와 주체와의 만남이란 진정한 관계성의 이름다움을 알게 하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성들에 대한 비판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의 소유자들은 대안적 삶의 방식을 꿈꾸게 되며, 이러한 비전과 그에 따른 실천은 저항적 행위로 해석되어질 여지를 남긴다. 이는 자크 엘룰이 말하는 정의의 실천적 적용으로서의 법의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엘룰은 언약의 조건으로서 법을 이해하는데, 이 법은 관계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언약 안에서, 신비가로서의 모든 존재는 근원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다른 존재들과의 급진적 관계성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생명의 풍성함을 지지하는 새로운 도덕적 관계성의 창출에 이끌려진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과 정의의 실천으로서의 법의 적용이 만나는 지점은 새로운 관계성의 재창출이란 과제가 벌어지는 지점이며,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작업이다.

주제어: 신비주의, 법, 종교, 급진적 관계성, 도덕적 주체, 저항
